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세대수

구분	76㎡	합계
국가유공자	1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중소기업 근로자	2	2
장애인	서울특별시	2
	경기도	1
	인천광역시	1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추천기관 및 청약자격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